

부속서 4-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일반 주해

1.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

- 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생산의 결과로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이 부속서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하여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이 달리 이 장의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리고
- 나. 그 상품이 이 장 및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기준의 해석 목적상,

- 가. 특정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되는 특정 기준 또는 특정 기준들은 그 호 또는 소호 바로 옆에 규정된다.
- 나. 소호에 적용가능한 기준은 그 소호의 상위 호에 적용가능한 기준에 우선한다.
- 다. 세번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 라. 상품이 어느 한 재료로 전적으로 만들어진 경우, 그 상품은 "완전히" 그 재료로 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 마.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류라 함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를 말한다.

호라 함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소호라 함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그리고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이라 함은

- 1) 원단을 언급하는 데 사용하는 때에는, 더 이상의 과정없이 사용하도록 준비된 마무리된 원단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생산 과정과 마무리 작업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과 작업은 제직, 편직, 니들링(미봉), 터프팅, 펠팅, 인텐글링 또는 다른 그러한 과정과 같은 형성 과정과, 표백, 염색 그리고 날염을 포함하는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그리고
- 2) 원사를 언급하는 데 사용하는 때에는, 필라멘트, 스트립, 필름 또는 쉬트의 압출로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필라멘트를 완전히 연신하거나 필름 또는 쉬트를 스트립으로 가늘게 벗기는 것이나, 모든 섬유를 원사로 방적하는 것, 또는 둘 다를 포함하고, 최종적인 사 또는 합사로 끝나는 모든 생산 과정과 마무리 작업을 말한다.

제42류	여행가방
4202.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외부 표면이 방직용 섬유 재료인 제4202.12호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변경된 것.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되거나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되거나 또는 두 방법이 모두 사용되고,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4202.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외부 표면이 방직용 섬유 재료인 제4202.22호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변경된 것.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되거나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되거나 또는 두 방법이 모두 사용되고,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4202.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외부 표면이 방직용 섬유 재료인 제4202.32호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변경된 것.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되거나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되거나 또는 두 방법이 모두 사용되고,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4202.9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외부 표면이 방직용 섬유 재료인 제4202.92호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변경된 것.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되거나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되거나 또는 두 방법이 모두 사용되고,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50류 내지 제63류)
규칙 1	수입 당사국은 제51류, 제52류, 제54류, 제55류, 제58류 또는 제60류의 방직용 섬유상품이 다음으로부터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것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가. 부록 4-나-1의 목록에 있는 하나 이상의 섬유원료 및 원사, 또는 나. 가호에 언급된 섬유원료 및 원사의, 그리고 이 부속서상 원산지 상품인 하나 이상의 섬유원료 및 원사의 혼합물 나호에 언급된 원산지 섬유원료 및 원사는 이 부속서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지 아니한 섬유원료 및 원사를 중량으로 7퍼센트까지 포함할 수 있다. 나호에 언급된 원산지 원사에 들어있는 탄성사는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것이어야 한다.
규칙 2	수입 당사국은 제61류 또는 제62류의 의류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하거나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되거나 또는 두 방법이 모두 사용되고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는 경우, 그리고 적용가능한 경우 칼라 및 커프스를 제외하고, 의류 결합 원단이 완전히 다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가. 부록 4-나-1의 목록에 있는 하나 이상의 원단 나. 부록 4-나-1의 목록에 있는 하나 이상의 원사로부터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형성된 하나 이상의 원단 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된 구성요소,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원단, 나호에 언급된 원단 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된 구성요소 또는 이 부속서상의 원산지 상품인 하나 이상의 원단 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된 구성요소의 혼합물 다호에 언급된 원산지 원단 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된 구성요소는 이 부속서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지 아니한 섬유 또는 원사를 중량으로 7퍼센트까지 포함할 수 있다. 다호에 언급된 원산지 원단 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된 구성요소에 들어있는 탄성사는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것이어야 한다.

규칙 3	수입 당사국은 제61류 또는 제62류의 의류 상품을, 경우에 맞게, 제61류 또는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에 기술된 보이는 안감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그러한 재료가 부록 4-나-1의 목록에 포함되고 그 상품이 이 협정의 특혜관세 대우를 위한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원산지 상품인 것으로 간주한다.
제50류	견
5001-50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001호 내지 제50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004-5006	이 상품군 외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004호 내지 제5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0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0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류	양모, 섬수모 또는 조수모, 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5101-51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101호 내지 제51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106-5110	이 상품군 외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106호 내지 제5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111-5113	이 상품군 외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111호 내지 제51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0호, 제5205호 내지 제5206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4호, 또는 제5509호 내지 제5510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52류	면
5201-52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201호 내지 제52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5호, 또는 제5501호 내지 제5507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5208-5212	이 상품군 외의 호에서 제5208호 내지 제5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0호, 제5205호 내지 제5206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4호, 또는 제5509호 내지 제5510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53류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5301-53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301호 내지 제53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306-5308	이 상품군 외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306호 내지 제53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53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3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307호 내지 제5308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5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307호 내지 제5308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53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3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4류	인조필라멘트

5401-54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401호 내지 제54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201호 내지 제5203호, 또는 제5501호 내지 제5507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5407	세번항목 제5402.4310호, 제5402.5210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세번항목 제5407.6111호, 제5407.6121호 또는 제5407.61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0호, 제5205호 내지 제5206호, 또는 제5509호 내지 제5510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4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0호, 제5205호 내지 제5206호, 또는 제5509호 내지 제5510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5408	제5403.10호, 제5403.31호 내지 제5403.32호, 제5403.41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4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0호, 제5205호 내지 제5206호, 또는 제5509호 내지 제5510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5501-55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501호 내지 제55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201호 내지 제5203호, 또는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또는 제5403.42호 내지 제5405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5508-5511	이 상품군 외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508호 내지 제55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201호 내지 제5203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5호, 제5501호 내지 제5503.20호, 제5503.40호 내지 제5503.90호, 또는 제5505호 내지 제551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5512-5516	이 상품군 외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512호 내지 제5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0호, 제5205호 내지 제5206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4호, 또는 제5509호 내지 제5510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56류	워딩, 펠트 및 부직포, 특수사, 끈, 코디지, 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601-56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601호 내지 제56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또는 제54류 내지 제55류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57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의 바닥깔개
5701-57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701호 내지 제57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8호, 또는 제5311호, 제54류,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58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5801-58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801호 내지 제58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또는 제54류 내지 제55류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59류	침투,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59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9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호 내지 제5212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12호 내지 제551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59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9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또는 제5306호 내지 제5311호, 또는 제54류 내지 제55류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5903-59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903호 내지 제59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호 내지 제5212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12호 내지 제551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59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9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호 내지 제5212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류, 또는 제5512호 내지 제551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5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9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또는 제54류 내지 제55류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59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9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호 내지 제5212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12호 내지 제551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60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6001-60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류,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제5501호 내지 제5503.20호, 제5503.40호 내지 제5503.90호, 또는 제5505호 내지 제551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류 규칙 1	제5408.2210호, 제5408.2311호, 제5408.2321호 또는 제5408.2410호에 분류된 원단을 제외하고, 다음의 소호 및 호에서 규정된 원단이 특정 남자 및 여자의 정장, 정장형태의 자켓, 스커트, 외투, 카코트, 아노락, 윈드브레이커, 그리고 유사한 물품의 보이는 안감 재료로 사용되는 때는, 그 원단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것이어야 한다. 제5111호 내지 제5112호, 제5208.31호 내지 제5208.59호, 제5209.31호 내지 제5209.59호, 제5210.31호 내지 제5210.59호, 제5211.31호 내지 제5211.59호, 제5212.13호 내지 제5212.15호, 제5212.23호 내지 제5212.25호, 제5407.42호 내지 제5407.44호, 제5407.52호 내지 제5407.54호, 제5407.61호, 제5407.72호 내지 제5407.74호, 제5407.82호 내지 제5407.84호, 제5407.92호 내지 제5407.94호, 제5408.22호 내지 제5408.24호, 제5408.32호 내지 제5408.34호, 제5512.19호, 제5512.29호, 제5512.99호, 제5513.21호 내지 제5513.49호, 제5514.21호 내지 제5515.99호, 제5516.12호 내지 제5516.14호, 제5516.22호 내지 제5516.24호, 제5516.32호 내지 제5516.34호, 제5516.42호 내지 제5516.44호, 제5516.92호 내지 제5516.94호, 제6001.10호, 제6001.92호, 제6005.31호 내지 제6005.44호, 또는 제6006.10호 내지 제6006.44호

류 규칙 2	이 류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의 결정 목적상, 그 상품에 적용가능한 기준은 그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에만 적용되며 그러한 구성요소는 그 상품 기준에 규정된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기준에서 상품이 이 류의 류 규칙 1에 열거된 보이는 안감의 세번변경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고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요건은 소매를 제외한 가장 넓은 표면적을 차지하는 의류 본체의 보이는 안감 원단에만 적용되며, 탈착가능한 안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101.10-6101.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1.10호 내지 제6101.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되거나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는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1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2.10-6102.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2.10호 내지 제6102.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102.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3.11-6103.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3.11호 내지 제6103.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103.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세번항목 제6103.1960호 또는 제6103.1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3.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103.21-6103.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3.21호 내지 제6103.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이러한 소호들의 앙상블의 부분품으로 수입되며, 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 섬유류의 제6101호에 기술된 의류 또는 제6103호에 기술된 자켓 또는 블레이저에 대하여, 그 의류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재료는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103.31-6103.3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3.31호 내지 제6103.3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의류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재료는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103.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세번항목 제6103.3940호 또는 제6103.39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3.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는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103.41-6103.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3.41호 내지 제6103.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4.11-6104.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4.11호 내지 제6104.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는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104.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세번항목 제6104.1940호 또는 제6104.19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4.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는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104.21－ 6104.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4.21호 내지 제6104.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양모·섬수모·면 또는 인조 섬유류의 제6102호에 기술된 의류 또는 제6104호에 기술된 자켓 또는 블레이저, 또는 제6104호에 기술된 스커트에 대하여, 이러한 소호들의 양상물의 부분품으로 수입시, 그 의류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재료는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104.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4.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는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104.33－ 6104.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4.33호 내지 제6104.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4.41－ 6104.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4.41호 내지 제6104.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4.51－ 6104.5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4.51호 내지 제6104.5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는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104.5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세번항목 제6104.5940호 또는 제6104.5980호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4.5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는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104.61-6104.6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4.61호 내지 제6104.6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5-61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5호 내지 제6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7.11-6107.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7.11호 내지 제6107.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7.21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7.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가. 세번항목 제6006.2110호, 제6006.2210호, 제6006.2310호, 또는 제6006.2410호. 다만, 그 상품은, 칼라, 커프스, 허리밴드 또는 고무밴드를 제외하고, 완전히 그러한 원단으로 되고,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또는 나. 다른 류.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7.22- 6107.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7.22호 내지 제6107.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8.11- 6108.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8.11호 내지 제6108.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8.21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8.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가. 세번항목 제6006.2110호, 제6006.2210호, 제6006.2310호, 또는 제6006.2410호. 다만, 그 상품이, 허리밴드, 고무밴드, 또는 레이스를 제외하고, 완전히 그러한 원단으로 되고,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또는, 나. 다른 류.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8.22- 6108.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8.22호 내지 제6108.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8.31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8.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가. 세번항목 제6006.2110호, 제6006.2210호, 제6006.2310호, 또는 제6006.2410호. 다만, 그 상품이, 칼라, 커프스, 허리밴드, 고무밴드, 또는 레이스를 제외하고, 완전히 그러한 원단으로 되고,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또는, 나. 다른 류.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8.32- 6108.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8.32호 내지 제6108.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09-61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9호 내지 제61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12.11- 6112.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12.11호 내지 제611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12.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1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 섬유류의 제6101호, 제6102호, 제6201호 또는 제6202호에 기술된 의류에 관하여, 이 소호의 스키슈트의 부분품으로 수입시, 그 의류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재료가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112.31- 6112.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12.31호 내지 제6112.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113-611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13호 내지 제611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제62류	의류 및 그 부속품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제외)

류 규칙 1	제5408.2210호, 제5408.2311호, 제5408.2321호 또는 제5408.2410호에 분류된 원단을 제외하고, 다음의 호 및 소호에서 규정된 원단이 특정 남자 및 여자의 정장, 정장형태의 자켓, 스커트, 외투, 카코트, 아노락, 윈드브레이커, 그리고 유사한 물품에 보이는 안감 재료로 사용되는 때는, 그 원단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것이어야 한다. 제5111호 내지 제5112호, 제5208.31호 내지 제5208.59호, 제5209.31호 내지 제5209.59호, 제5210.31호 내지 제5210.59호, 제5211.31호 내지 제5211.59호, 제5212.13호 내지 제5212.15호, 제5212.23호 내지 제5212.25호, 제5407.42호 내지 제5407.44호, 제5407.52호 내지 제5407.54호, 제5407.61호, 제5407.72호 내지 제5407.74호, 제5407.82호 내지 제5407.84호, 제5407.92호 내지 제5407.94호, 제5408.22호 내지 제5408.24호, 제5408.32호 내지 제5408.34호, 제5512.19호, 제5512.29호, 제5512.99호, 제5513.21호 내지 제5513.49호, 제5514.21호 내지 제5515.99호, 제5516.12호 내지 제5516.14호, 제5516.22호 내지 제5516.24호, 제5516.32호 내지 제5516.34호, 제5516.42호 내지 제5516.44호, 제5516.92호 내지 제5516.94호, 제6001.10호, 제6001.92호, 제6005.31호 내지 제6005.44호, 또는 제6006.10호 내지 제6006.44호
류 규칙 2	이 류의 의류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된 경우, 그리고 의류 결합 직물이, 칼라 또는 커프스를 제외하고, 완전히 하나 이상의 다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가. 면이 중량으로 85퍼센트 이상인 제5801.23호에 속하는 벨벳된 직물 나. 면이 중량으로 85퍼센트 이상이고 1센티미터당 7.5 웨일을 초과하여 포함하는 제5801.22호에 속하는 코듀로이 직물 다. 제5111.11호 또는 제5111.19호에 속하는 직물로서 제직폭이 76센티미터 미만의 수직직물이고 해리스 트워드 협회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영국에서 직조되고 그 협회의 인증을 받은 것 라. 평방미터당 중량이 340그램 이하이고 섬수모의 함유량이 중량으로 20퍼센트 이상이고 인조 스테이플 섬유 함유량이 중량으로 15퍼센트 이상이고 양모를 포함하는 제5112.30호에 속하는 직물, 또는 마. 정방형 직조이고, 평방미터당 중량이 110그램 이하이고 평방 센티미터당 60-70수의 정사와 위사를 포함하고, 실의 미터식 번수가 76번수를 초과하는 단사로 만들어진 제5513.11호 또는 제5513.21호에 속하는 바티스트 직물
류 규칙 3	이 류에 규정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의 결정 목적상, 그 상품에 적용가능한 기준은 그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에만 적용되며 그러한 구성요소는 그 상품 기준의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기준에서 상품이 이 류의 류 규칙 1에 열거된 보이는 안감의 세번변경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할 경우, 그러한 요건은 소매를 제외한 가장 넓은 표면적을 차지하는 의류 본체의 보이는 안감 원단에만 적용되며, 탈착가능한 안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201.11-6201.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1.11호 내지 제6201.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201.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1.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1.91－ 6201.9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1.91호 내지 제6201.9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201.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1.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2.11－ 6202.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2.11호 내지 제6202.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202.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2.91－ 6202.9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2.91호 내지 제6202.9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202.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2.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3.11－ 6203.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3.11호 내지 제6203.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203.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세번항목 제6203.1950호 또는 제6203.1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3.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203.21－ 6203.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3.21호 내지 제6203.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양모, 섬수모, 먼, 또는 인조 섬유류의 제6201호에 기술된 의류 또는 제6203호에 기술된 자켓 또는 블레이저에 관하여, 이러한 소호들의 양상불의 부분품으로 수입시, 그 의류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203.31－ 6203.3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3.31호 내지 제6203.3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203.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세번항목 제6203.3950호 또는 제6203.3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3.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203.41－ 6203.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3.41호 내지 제6203.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4.11－ 6204.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4.11호 내지 제6204.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204.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세번항목 제6204.1940호 또는 제6204.19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4.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204.21－ 6204.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4.21호 내지 제6204.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섬유의 제6202호에 기술된 의류, 제6204호에 기술된 재킷 또는 블레이저, 또는 제6204호에 기술된 스커트에 관하여, 이러한 소호들의 앙상블의 부분품으로 수입시, 그 의류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204.31－ 6204.3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4.31호 내지 제6204.3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204.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세번항목 제6204.3960호 또는 제6204.39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4.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204.41－ 6204.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4.41호 내지 제6204.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4.51－ 6204.5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4.51호 내지 제6204.5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204.5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세번항목 제6204.59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4.59호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그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204.61－ 6204.6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4.61호 내지 제6204.6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5.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5.20－ 6205.30	소호 규칙 편 또는 인조섬유의 남성 또는 남아용 셔츠는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결합된 경우, 그리고 의류 겹감 직물이, 칼라 또는 커프스를 제외하고, 완전히 하나 이상의 다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가. 미터식 평균변수가 135변수를 초과한 것으로서 제5208.21호, 제5208.22호, 제5208.29호, 제5208.31호, 제5208.32호, 제5208.39호, 제5208.41호, 제5208.42호, 제5208.49호, 제5208.51호, 제5208.52호 또는 제5208.59호의 직물 나. 미터식 평균변수가 70변수를 초과한 것으로서, 평방센티미터 당 70 초과의 경사와 위사를 포함하며, 정방형 직조가 아닌, 제5513.11호 또는 제5513.21호의 직물 다. 미터식 평균변수가 70변수를 초과한 것으로서, 평방센티미터당 70 초과의 경사와 위사를 포함하며 정방형 직조가 아닌, 제5210.21호 또는 제5210.31호에 해당하는 직물 라. 미터식 평균변수가 65변수를 초과한 것으로서, 평방센티미터 당 75 초과의 경사와 위사를 포함하며, 정방형 직조가 아닌, 제5208.22호 또는 제5208.32호에 해당하는 직물

	마. 평방미터 당 중량이 170그램 미만으로서 도비장치로 제조된 도비직물을 가진 것으로서 제5407.81호, 제5407.82호 또는 제5407.83호에 해당하는 직물 바. 미터식 평균변수가 85변수를 초과한 것으로서 평방센티미터 당 85 초과의 경사와 위사를 포함하며, 정방형 직조가 아닌, 제5208.42호 또는 제5208.49호에 해당하는 직물 사. 미터식 평균변수가 95변수 이상인 것으로서, 평방센티미터 당 75 초과의 경사와 위사를 포함하고 단사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정방형 직조인 제5208.51호에 해당하는 직물 아. 미터식 평균변수가 95변수 이상으로서, 경사와 위사의 색을 다양하게 하여 생성된 체크무늬효과가 특징인 것으로서 단사로 제조되고 강염패턴을 가진 것으로서 평방 센티미터당 85 초과의 경사와 위사를 포함한 것을 말하며, 정방형 직조인 제5208.41호에 해당하는 직물, 또는 자. 미터식 평균변수가 65변수 초과인 것으로서 식물성 염료로 염색된 경사와 백색 또는 식물성 염료로 염색된 위사로 된 제5208.41호에 해당하는 직물
6205.20-6205.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5.20호 내지 제6205.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09호, 제5511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5.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06-6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6호 내지 제6210호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11.11-6211.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11.11호 내지 제6211.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1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1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가.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나. 양모, 섬수모, 면, 또는 인조 섬유류의 제6101호, 제6102호, 제6201호 또는 제6202호에 기술된 의류에 관하여, 이 소호의 스키슈트의 부분품으로 수입시, 그 의류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211.31-6211.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11.31호 내지 제6211.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213-621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13호 내지 제621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제63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된 기타 상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및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넘마
류 규칙 1	이 류에 규정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의 결정 목적상, 그 상품에 적용 가능한 기준은 그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에만 적용되고 그러한 구성요소는 그 상품 기준의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6301-63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301호 내지 제63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물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3	다른 류 또는 세번항목 제5402.4310호 또는 제5402.5210호에서 세번항목 제6303.9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3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4-63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304호 내지 제63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63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3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제70류	유리섬유 로빙 및 사
70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0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007호 내지 제7020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94류	이불류
9404.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40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007호, 제5111호 내지 제5113호, 제5208호 내지 제5212호, 제5309호 내지 제5311호, 제5407호 내지 제5408호 제5512호 내지 제5516호, 제6307.90호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